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 colspan="4">Ⅰ. 대응체계</td></tr>
<tr><td>6</td><td>2. 심각단계시 대응
나. 기관별 임무 개요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이하, 권역센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현황〉
<table>
<tr><th>권역</th><th>관할 지역</th><th>소재지</th><th>진단분석과
(검역소 실험실)</th><th>관할 검역소</th><th>연락처</th></tr>
<tr><td>수도권</td><td>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td><td>서울</td><td>①인천공항(BL3&2)
②인천(BL2)
③동해(BL2)</td><td>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국립동해검역소</td><td>02-361-5711
02-361-5712
02-361-5722</td></tr>
<tr><td>충청권</td><td>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td><td>대전</td><td>군산(BL2)</td><td>-</td><td>042-229-1512
042-229-1513
042-229-1527</td></tr>
<tr><td>호남권</td><td>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td><td>광주</td><td>①목포(BL2)
②여수(BL3&2)</td><td>국립목포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군산검역소</td><td>062-221-4111</td></tr>
<tr><td></td><td>제주특별자치도</td><td>제주
(출장소)</td><td>제주(BL2)</td><td>국립제주검역소</td><td>062-221-4120
062-221-4121</td></tr>
<tr><td>경북권</td><td>대구광역시
경상북도</td><td>대구</td><td>포항(BL2)</td><td>국립포항검역소</td><td>053-550-0611
053-550-0612
053-550-0624</td></tr>
<tr><td>경남권</td><td>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td><td>부산</td><td>①부산(BL2+)
②김해(BL2)
③마산(BL2)
④통영(BL2)
⑤울산(BL2)</td><td>국립부산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td><td>051-260-3715
051-260-3716
051-260-3725</td></tr>
</table></td><td>2. ----------
나. ----------
1)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현황〉
<table>
<tr><th>권역</th><th>관할 지역</th><th>소재지</th><th>연락처</th><th>진단분석과
(검역소 실험실)</th><th>검역소 연락처</th></tr>
<tr><td>수도권</td><td>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td><td>서울</td><td>02-361-5719
02-361-5773</td><td>①인천공항(BL3&2)
②인천(BL2)
③동해(BL2)</td><td>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td></tr>
<tr><td>충청권</td><td>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td><td>대전</td><td>042-229-1527
042-229-1515</td><td>군산(BL2)</td><td>국립평택검역소
(031-682-5213)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8)</td></tr>
<tr><td>호남권</td><td>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td><td>광주</td><td>062-221-4121</td><td>①목포(BL2)
②여수(BL3&2)</td><td>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5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td></tr>
<tr><td></td><td>제주특별자치도</td><td>제주
(출장소)</td><td>064-749-9702</td><td>제주(BL2)</td><td>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10)</td></tr>
<tr><td>경북권</td><td>대구광역시
경상북도</td><td>대구</td><td>053-550-0612
053-550-0622</td><td>①포항(BL2)
②울산(BL2)</td><td>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6)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5)</td></tr>
<tr><td>경남권</td><td>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td><td>부산</td><td>051-260-3713
051-260-3725</td><td>①부산(BL2+)
②김해공항(BL2)
③마산(BL2)</td><td>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20)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마산검역소
(051-981-5302)</td></tr>
</table></td><td>〈감염병정책총괄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검역소 관련 사항 현행화</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 colspan="4">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td></tr>
<tr><td>9</td><td>1. 사례 정의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tr><th>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th><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h>임시선별검사소</th></tr><tr><td>1</td><td rowspan="3">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td><td rowspan="2">사례정의 해당자</td><td rowspan="3">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td></tr><tr><td>1.5</td></tr><tr><td>2단계 이상</td><td>모두 무료검사</td></tr></table>▶ (1.5단계 이하) 사례정의 해당자는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2단계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진료비, 검사비) 무료</td><td>1. -------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tr><th>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th><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h>임시선별검사소</th></tr><tr><td>1</td><td rowspan="2">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td><td>사례정의 해당자</td><td rowspan="2">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td></tr><tr><td>2단계 이상</td><td>모두 무료검사</td></tr></table>▶ (1단계 이하) 사례정의 해당자는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2단계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진료비, 검사비) 무료</td><td>〈진단검사운영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중수본-20199호, 21.6.26.)에 따른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안내</td></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5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신설)	5. ---------- ○ 사망사례 최초 인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사망신고를 최초로 받은 보건소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관련자료 제출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8조의4, 제76조의2 (2021.3.9.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2020.12.30. 시행) ▶ 확진 후 격리 치료기관 중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 입원시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 **의무기록**은 격리치료 기간 중 주치의 작성 경과기록지, 흉부 X-ray 또는 CT 영상판독기록지, 입원초기 작성한 (기초)간호 정보조사지 및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자는 응급실 기록지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후 확진 등 특이사례의 경우 확진 전·후 의무기록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일체 **[제출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이메일**(kdca21@korea.kr)을 이용하여 **제출** ▶ **우편제출** 시 **사전연락**(043) 719-7747, 7746, 7744) **필수** - 제출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14동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정보분석팀〉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자료 제출 사항 안내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7	2.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2. ------ ▶ ---------- ▶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	〈환자관리지침팀〉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련 지침 안내
22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나)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다. ---------- 2) ---------- 나)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 전까지 ----------	〈격리관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간 명확화
23	3. 진단검사 ○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2~13일째(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1회 실시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시설격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시행 ▶ 교류확대 가능 국가는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3. ------ ○ 모든 입국자는 ---------- 검사 1회 실시 - ----------격리해제 전 검사 --- (삭제)	〈격리관리팀〉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조기발견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33	2. 확진환자 격리해제 다. 격리해제 관리 2)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에 격리해제 보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2. ---------- 다. ---------- 2) ---------- ○ ---------- ---------- ---------- ▶ 시·도는 격리해제 보고 받은 자료를 매일 취합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에 제출(kdca21@korea.kr)	〈정보분석팀〉 시·도 격리해제 보고 절차 반영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34</td>
<td>3. 역학조사
[역학조사 관련 용어]
<table>
<tr><th>용어</th><th>정의</th></tr>
<tr><td>역학조사</td><td>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td></tr>
<tr><td>감염원 규명</td><td>감염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행동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 증상 발현일, 증상발현 직전 이동장소 등을 파악</td></tr>
<tr><td>잠복기</td><td>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td></tr>
<tr><td>유행곡선</td><td>시간에 따른 발생 사례, 입원 또는 사망 수 등을 포함하여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표시</td></tr>
<tr><td>접촉자 추적</td><td>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물리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감염 사슬을 추적하고 질병의 사람 간 전파를 파악하는 것</td></tr>
<tr><td>접촉자</td><td>감염병환자와 동일장소에서 대화를 통해 비말이 도달할수 있는 거리(1m 이내)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사람(◆ 접촉자 범위 예시 참조)</td></tr>
<tr><td>지표환자</td><td>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일이 가장 빠른 사람</td></tr>
<tr><td>선행확진자</td><td>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자 중에서 확진일이 빠른 사람</td></tr>
<tr><td>근원환자</td><td>집단감염 사례의 확진자들 중 증상발현일이 가장 빠른 사람</td></tr>
<tr><td>집단감염</td><td>동일한 시간(기간) 및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어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td></tr>
</table></td>
<td>3. -------
[----------]
<table>
<tr><th>용어</th><th>정의</th></tr>
<tr><td>감시</td><td>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td></tr>
<tr><td>역학조사</td><td>----------

-------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td></tr>
<tr><td>잠복기</td><td>----------</td></tr>
<tr><td>전파가능기간</td><td>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td></tr>
<tr><td>세대기</td><td>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td></tr>
<tr><td>유행곡선</td><td>---------- 발생 상황을 ------- 시각화한 그림</td></tr>
<tr><td>전향적 접촉자 조사</td><td>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td></tr>
<tr><td>후향적 접촉자 조사</td><td>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통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td></tr>
<tr><td>지표환자</td><td>----------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td></tr>
<tr><td>선행확진자</td><td>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td></tr>
<tr><td>근원환자</td><td>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환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td></tr>
<tr><td></td><td></td></tr>
</table></td>
<td>〈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관련 용어 개정</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34</td><td>[대응절차]
</td><td>[확진환자 대응절차]
</td><td>〈역학조사팀〉
대응절차 부분 개정</td></tr>
<tr><td>36</td><td>다. 역학조사반 구성
▶ 역학조사반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무원(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의료인</td><td>다. ----------
▶ ---------- 사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5조)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td><td>〈역학조사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역학조사반원 자격 개정</td></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38	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조사·등록 ○ (확진자 역학조사)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확진환자의 발생을 인지(통보받은) 후, 이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를 최초 인지 후 각각 24시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첨부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권역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마. ---------- ○ (----------) ---------- ---------- ---------- ▶ [---] ----------[---] --- ---------- ---------- (삭제)	〈역학조사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개정
39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접촉자 조사 및 등록 ○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가 시·도 즉각대응팀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 실시 (신설)	3-1. ---------- 가. ---- 조사 ○ ---------- 보건소▶ 또는 검역소는 ---------- - 외국인 노출자(접촉자) 관련 집단발생 시 지자체에서는 관계부처(여가부, 노동부, 법무부) 외국인 지원 콜센터 해당 언어 직통번호 등 파악 후 역학조사에 활용 참고자료 [부록 24]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 외국인 노출자(접촉자) 대상 역학조사는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을 참고하여 역학조사 관련 서식 3~6, 23(17개 국가별 번역본)을 활용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통지서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공동격리자용)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 17개 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라오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역학조사팀〉 등록 부분 별도구분으로 삭제 담당기관을 명확하게 지정 외국인 노출자(접촉자) 관련 사항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39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유선 통보 ▶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가 조사를 수행하되, 2개 이상 시·도가 조사·대응·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시·군·구별 전담관리자 간 접촉자 명단과 정보 공유 관련서식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접촉자 명단 등록]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를 통해 등록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명단 등록 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격리통지서 발급(격리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삭제)	〈역학조사팀〉 중복 내용 삭제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39	나. 명단작성 및 자가격리 통보 (신설)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을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나. 명단작성·등록 ---------- ○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검역소는 확진환자를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가 조사를 수행하되, 2개 이상 시·도가 조사·대응·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시·군·구별 전담관리자 간 접촉자 명단과 정보 공유 관련서식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 등록(검역소에서의 확진자 접촉자는 검역소에서 등록)하고, ----------	〈역학조사팀〉 업무 명확화를 위해 보건소 및 검역소 업무 안내
40	다. 관리사항 2) 접촉자 관리 (신설)	다. ----- 2) -------- ○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역학조사반)의 감염위험도 판단에 따라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시행을 결정할 수 있음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검사 권고가 원칙 ▶ 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고	〈역학조사팀〉 위험도 평가에 따른 접촉자 분류 시 검사 및 안내사항 명확화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41	3)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 및 조치 ◆ **접촉자 범위 예시** * 출처 : WHO,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20.05.10.)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생략)	3) ---------- ◆ ---------- * --- : ---------- ----------('21.02.01.) * ---------- ---------- ○ ---------- 14일간(또는 격리 전까지) ---------- (생략)	〈역학조사팀〉 접촉자 범위 관련 현행화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기간을 격리 전까지로 구체적 기준 추가
44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나. 현장 대응 3) 역학조사 ○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신설)	3-2. ---------- 나. -------- 3) ------- ○ (---------) ---------- - 방역관은 감염원 조사 결과, 공통 폭로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노출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검사 대상자 확대가 가능 ▶ 접촉자 범위 예시 - 방역관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3일 전부터의 접촉자까지 검사대상 확대 - 감염원 조사 결과 공통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14일 전부터의 접촉자까지 검사 대상 확대	〈역학조사팀〉 정보요청 공문 삭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으로 변경 지자체 방역관 판단에 따라 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 및 안내 접촉자 범위 예시 안내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44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확인 : 동선은 환자 면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❶, DUR❷, 카드사용내역❷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만 시행 ❶ GPS 조회는 시군구, 시도에서 경찰관서등에 요청 가능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 ❷ DUR과 카드사용내역 조회는 시·도 방역관이 질병관리청에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	▶ ---------- : ---------- ---------- (전자)출입명부[KI-Pass]❸ 등의 ---------- ❶ ---------- ❷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또는 ---------- ❸ (전자)출입명부[KI-Pass] 조회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요청 ▶ **(전자)출입명부 활용한 접촉자 추적관리 절차** - 시설물 방문자 정보요청→시설물 방문자 정보 통신사업자(SKT ,KT, LGU+)에 주소정보(시·도/시·군·구)요청▶→회신받은 정보 능동감시 시스템(다중이용시설 방문)에 등록→접촉자 관할 시·도에 검사 및 추적관리 협조요청 ▶ 필요서류 : 정보요청 공문, 공문작성자 신분증	〈역학조사팀〉 (전자)출입명부 조회 및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절차 안내 추가
48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다. 조치 사항 4)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 집단시설 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3-2. ---------- 다. ------ 4) ---------- 바) ---------- ○ ---------- ----------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	〈격리관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간 명확화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52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나. 자가격리 절차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격리통지서를 발급 및 전달,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보건교육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대상자에게 보급 등 (신설) ▶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신속히 직접 통보(유선, 문자 등) 및 검사 실시	3-3. ---------- 나. ---------- ○ ---------- ▶ ----------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문자, SN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후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은 자가격리 키트와 함께 우편, 택배, 인편 등으로 발송 가능 - 문자 메시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격리대상자, 격리기간, 격리장소, 통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 필수기재사항은 격리통지서 원본 사진파일 첨부 등으로 대체 가능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및 자가격리앱 설치안내 등을 추가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 - 통지서 본인 수신여부는 문자 회신 또는 자가격리 키트와 함께 발송한 수령증 서명 사진 문자 회신 등으로 갈음 가능 - 자가격리앱 기록 확인 등을 통해 격리대상자의 적정 격리 여부 모니터링(수시) ▶ 격리통지서의 전달 및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이에 준하는 기타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삭제)	〈격리관리팀〉 (방대본-16585) 격리통지서 교부 방법 관련 개선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53	나. 자가격리 절차 ○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날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나.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	〈격리관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간 명확화
53	다.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공동 격리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적용 - 영유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 - 기 타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가능 ▶ 대상 및 범위 최소화 - 장애인, 영유아 등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 ① 가구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함 ② 공동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에게도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③ 지원의 경우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	다. ---------- ○ ----------, 장애인·영유아 등 ----------▶ ▶ ------- ○ 대상 - ---- : ---------- - ---- : ---------- - ---- : ----------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는 사람 ▶ ---------- - ---------- 자가격리 통지를 ---------- 공동격리 의사를 ------- (삭제) ① ------- 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②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택 1(중복지원하지 않음)	〈격리관리팀〉 자구 수정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54	라. 자가격리 해제 ○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 ▶ (예시) 최종접촉일/입국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2~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신설)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해제 여부 결정	라. ----------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 ▶ ---------- ○ (격리해제 전 검사)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최종접촉일로부터 7~8일째 추가로 검사 가능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격리관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및 해제일 명확화 격리해제일 계산 시 휴일 포함하여 계산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격리기간 중 최종 접촉일로부터 7~8일째 추가 검사 가능
54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⑤ 만 65세 이상 ⑥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 등 * 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 필요 시 지자체에서 추가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 --------- 검사 --- ① ---------- ② ---------- * ---------- ③ ---------- ④ ---------- ⑤ ---------- ⑥ 모든 해외 입국자 -- (삭제) ▶ ----------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을 ---------	〈격리관리팀〉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조기발견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54	○ (협의)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할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① 대상자 인적정보 ②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③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 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	〈격리관리팀〉 지속적 미결정 판정시 위험도 판단 등이 어려워 격리 해제 결정 지연, 최대 잠복기를 초과한 자가격리 불편 해소
56	마. 기타 사항 (신설)	마. ------ 4) 예방접종 예약 변경 ○ 자가격리 기간 중 백신접종 예약이 된 경우 격리통지서를 근거로 관련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접종일 변경 요청 ▶ 자가격리기간 중 예방접종을 위한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해외입국 격리자의 경우 필수업무 수행 등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접종일정 변경이 어렵거나, 예약접종일에 접종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입국 1일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 접종을 위한 일시 외출 가능(밀접접촉에 따른 격리자는 제외) ▶ 반드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및 방역수칙(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접종 및 귀가 시 타인 접촉 금지, 접종 후 즉시 귀가 등) 준수	〈격리관리팀〉 자가격리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위한 무단 외출 사례 방지 해외입국 격리자의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공적 목적의 예방접종 가능 단서 조항 추가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58	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다. 지역사회 선제검사 	3-4. ---------- 다. ---------- 	〈진단검사운영팀〉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개선으로 인한 흐름도 추가 및 문구 수정
58	○ (실적보고) 지자체(시·군·구)는 검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검사 실적을 검사 관리 대장에 관리하고 검사 종료 후(3-7일 이내), 선제검사 결과서를 관할 권역센터로 제출. 검사비 청구시 당월 검사 건에 대하여 익월 첫째 주까지 검사 관리대장, 검사 실적 보고를 질병청으로 제출 (신설) ✎ 관련서식 [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제출기한 : 검사 종료 후 3~7일 내)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제출기한 : 익월 첫째 주 이내)	○ (------) ----------, 검사 결과서, 검사관리대장, 검사실적을 권역센터로 --- ▶ 자체예산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사업 완료 후에 검사 결과서와 검사 실적을 권역센터에 제출(국가 전체 진단역량 관리 목적) ✎ 관련서식 [서식 24]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계획서 [서식 25]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서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제출기한 : 검사 종료 후 3~7일 내)	〈진단검사운영팀〉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개선으로 인한 내용 개정 및 자체예산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 내용 추가 제출서식(25,26,27) 제출기한 오기 수정 및 서식명 개정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58	(신설)	○ (검사비청구) 당월 검사 건에 대하여 지자체 검사 의뢰 관리대장과 수탁검사기관 검사 결과대장을 비교 완료 후, '진단검사비 청구서'에 확인 날인 관련서식 [서식 28] 진단검사비 청구서	〈진단검사운영팀〉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개선으로 인한 내용 신설
60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신설)	4. ----------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 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역학조사팀〉 중앙방역대책본부-13741(7.7)「코로나19 재검출·재감염 사례 관리 변경계획 보고」에 따른 재검출 사례 정의 개정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60	가. 재검출 사례 발생 시 보고 ○ (발생보고)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는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발생 즉시 보고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재검출 사례는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는 하지 않음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 (삭제)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격리해제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즉시 - 해외 입국 재검출 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 (삭제)	〈역학조사팀〉 발생 보고 과정부터 접촉자 관리까지 조사 및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안내 발생 보고 관련 주체, 대상, 시점, 방법 등 정리 및 해외입국 재검출자 내용 포함 변경된 사례정의에 따라 격리 해제 후 재검출 사례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문구 삭제
60	나. 재검출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조사 ○ (사례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후 사례 조사서 작성 관련서식 [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삭제) ○ (-----)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 조사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고 주체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 필요) ▶ 조사대상 : 시스템에 발생 보고된 모든 재검출 사례 ▶ 조사시점 : 격리 해제 후 재검출 사례 또는 해외 입국 재검출 사례 발생 인지 시 ▶ 조사방법 :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작성 (삭제)	〈역학조사팀〉 조사 및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안내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61	(신설)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판정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입소시설 관할 소재지 보건소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 ②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 ▶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로 인한 감염병 전파 시 구상권 청구	〈역학조사팀〉 「코로나19 재검출·재감염 사례 관리 변경계획 보고」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사례판정 실시 및 판정주체 명시 사례판정 부분에 해외 입국 재검출자 관련 해외확진력 증명서류 조건 포함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61</td>
<td>○ (결과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 사례 조사서’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결과보고 방법
-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재검출 사례 조사서
- 재검출 사례의 이름을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기초역학조사서 입력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입력
- 재검출 사례 중복 입력의 경우: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환자 이름 → 조회 → 조회된 사례조사서 → 재검출 사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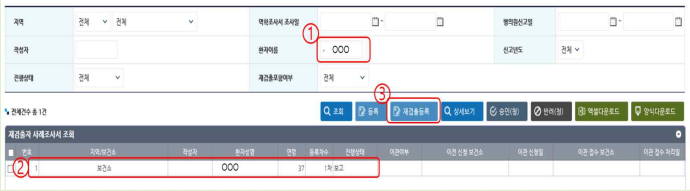
(신설)</td>
<td>○ (사례보고) ----------

▶ 사례보고 ---
- --- : ----------
- ----------
⇒ ----------
- ----------

- 재감염에 대한 평가에는 사례정의에 따른 판정결과 선택, 기타항목은 재감염추정 또는단순재검출이 아닌 사례인 경우 선택
- 2. 기타에는 사례 특이사항, 판정 역학조사관 성명 등 기재

관련서식 [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해외 확진력이 확인된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① 기초역학조사서 먼저 등록 후, ② 재검출 사례 조사서 등록
▶ 기초역학조사서에는 해외에서의 최초 확진 정보 입력
▶ 재검출 사례 조사서에는 국내 입국 후 재검출 정보 입력 후, 첨부파일에 해외 확진력 관련 증명서류 등 첨부</td>
<td>〈역학조사팀〉
결과보고를 사례보고로 문구 수정 및 자구 포함

지자체 주도의 사례판정에 따라 사례조사 후 1. 재감염에 대한 평가에 판정결과를 선택하게끔 하여 보고 내용 추가

개정 전 해외입국 재검출자 대응 시 신규확진자로 간주하여 기초역학조사서만 등록하였고, 개정후 기초역학조사서 및 사례조사서 모두 등록하도록 변경관리하고자 함

해외확진력 관련 서류를 사례조사서 첨부파일에 포함하도록 안내</td>
</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62	다. 재검출 사례 및 접촉자 관리 ○ (관리조치) 재검출자 및 접촉자 격리 조치 없음 ▶ 밀접접촉자 : 재검출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삭제)	〈역학조사팀〉 재검출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단순 재검출과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환자관리 및 접촉자 관리 조치 사항 구분을 위함
62	(신설)	○ (환자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 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 ○ (접촉자 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자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접촉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접촉자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격리 (자가, 시설, 병원)	〈역학조사팀〉 재검출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단순 재검출과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환자관리 및 접촉자 관리 조치 사항 구분을 위함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62	라. 재검출 특이사례 관리 ○ (사례조사) 격리해제 후 사례분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 심층조사 시행(지자체) ▶ 사례분류 조건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다른 확진자 노출력 또는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 ○ (사례검토)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례 검토 후 질병관리청 보고 및 필요시 선 격리조치(지자체, 권역센터) ○ (사례판단) 질병관리청 내 관련 부서 간 심층 검토를 통한 최종적으로 사례 판단 ▶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감염 확진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확인 시), 재감염 추정사례(실험실적, 역학적, 임상적 근거 불충분 시) ▶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등	(삭제)	〈역학조사팀〉 재검출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재검출 특이사례' 관련 내용 삭제
62	(신설)	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보고절차) 지자체 → 권역센터, 본청 종합상황실 → 본청 담당부서 ▶ (지자체) 재검출 사례조사서 작성(시스템 개선 전까지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종합의견에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기재) 후 종합상황실로 유선 보고 ▶ (본청 종합상황실) 신규 환자 번호 부여 ▶ (권역센터) 시스템의 재검출자 사례조사서를 통한 재감염 추정사례 검토,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지자체 관리조치 점검, 결과 환류 등 ▶ (본청 담당부서) 재감염 추정사례 및 확정사례 정보관리, 재감염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 등 추가검사 및 종합평가 실시	〈역학조사팀〉 중앙방역대책본부-13741(7.7)「코로나19 재검출·재감염 사례 관리 변경계획 보고」에 따른 사례보고 절차 변경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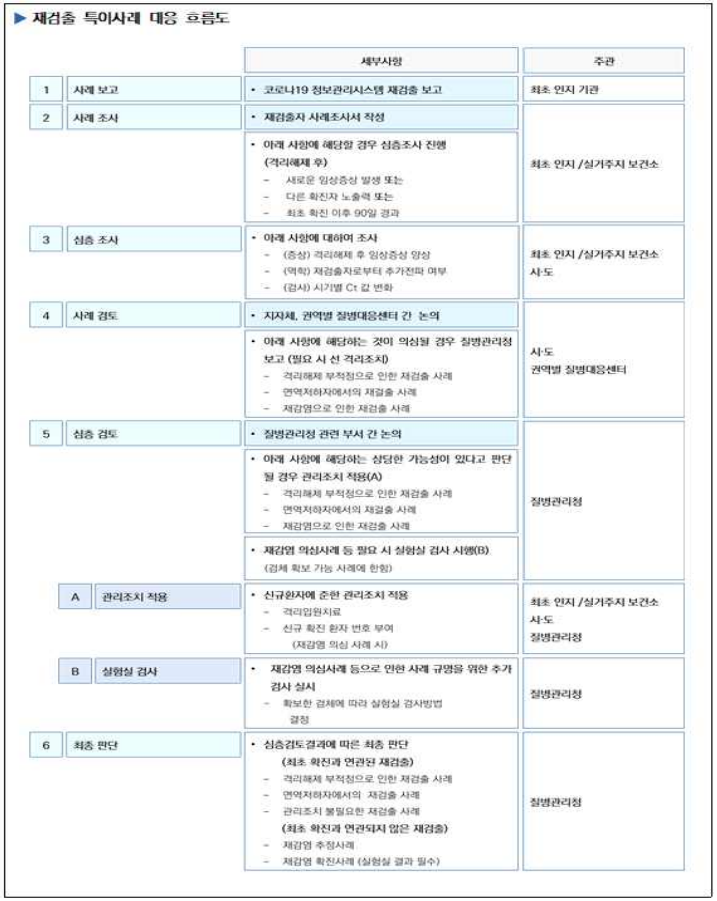 ▶ 재검출 특이사례 대응 흐름도 세부사항 / 주관 1 사례 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 보고 — 최초 인지 기관 2 사례 조사 ·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층조사 진행 (격리해제 후) – 새로운 임상증상 발생 또는 – 다른 확진자 노출력 또는 – 최초 확진 이후 90일 경과 — 최초 인지 /실거주지 보건소 3 심층 조사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증상) 격리해제 후 임상증상 양상 – (역학) 재검출자로부터 추가전파 여부 – (검사) 시기별 Ct 값 변화 — 최초 인지 /실거주지 보건소 시·도 4 사례 검토 · 지자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청 보고 (필요 시 선 격리조치)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감염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 시·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5 심층 검토 · 질병관리청 관련 부서 간 논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조치 적용(A)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재감염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 재감염 의심사례 등 필요 시 실험실 검사 시행(B) (검체 확보 가능 사례에 한함) — 질병관리청 A 관리조치 적용 · 신규환자에 준한 관리조치 적용 – 격리입원치료 – 신규 확진 환자 번호 부여 (재감염 의심 사례 시) — 최초 인지 /실거주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 B 실험실 검사 · 재감염 의심사례 등으로 인한 사례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 실시 – 확보한 검체에 따라 실험실 검사방법 결정 — 질병관리청 6 최종 판단 · 심층검토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 (최초 확진과 연관된 재검출) – 격리해제 부적정으로 인한 재검출 사례 – 면역저하자에서의 재검출 사례 – 관리조치 불필요한 재검출 사례 (최초 확진과 연관되지 않은 재검출) – 재감염 추정사례 – 재감염 확진사례 (실험실 결과 필수) — 질병관리청	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 세부사항(국내사례) / 해외입국자 중 재검출자 / 주관 1 발생보고 사례조사 — 재검출 사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보고 (가확진력 증명불가) – 국내 신규사례로 간주, 시스템 보고 (가확진력증명가능) – 국내 사례에 준하여 관리 · 아래 항목 만족할 경우 단순 재검출로 분류, 별도 조치 시행하지 않음 – 최초 확진 이내 45일 이내 재검출 그리고 – 다른 확진자 노출력 없음 그리고 – 임상증상 없음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해외 확진 당시의 증명자료 제출 – (증명자료) 현지 PCR 양성결과지, 의무기록 등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 (제출시점) 국내 입국 후, PCR 검사 양성 판정 이후 – (제출장소) 최초 인지/실 거주지 보건소 2 사례 판정 사례 보고 · 아래 항목 만족할 경우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 선 관리조치 시행 – 증상 유무 관계없이 최초 확진 90일 이후 재검출 – 최초 확진 45-89일 사이 코로나 증상발현 또는 접촉력 존재 재검출사례조사서 작성, 재감염 추정사례 시도 및 센터 공유 —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3 관리조치 적용 · 사례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환자 관리조치 –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입국자에 준해 관리) – 재감염 추정 : 격리입원치료, 질병관리청 중환자병실 전파 · 사례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접촉자관리조치 – 단순 재검출 : 접촉자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 재감염 추정 :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격리 (자가, 시설, 병원) — 실 거주지 보건소/ 시·도 4 재감염 추정사례 검토 및 평가 환류 · 재감염 추정사례 심층 검토 – (증상) 격리해제 후 임상증상 조사 필요 시 의무기록 검토 – (역학) 기확진자노출력 – (검사) 시기별 Ct값 변화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관리조치 점검 및 환류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5 재감염 확정사례 판정 · 재감염 추정사례 중 검체확보 가능한 경우 실험실 검사 시행 · 검사결과 종합하여 확정사례 최종 판단 · 해외입국 후 재감염 추정사례 정보관리 — 질병관리청 · 재감염 추정사례, 확정사례 정보관리	〈역학조사팀〉 재검출·재감염 사례 관리 변경에 따라 대응흐름도 변경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64</td><td>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 (적용대상) 해외유입 확진자 및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환자
○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 격리가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 동실 사용이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동실(同室) 사용이 가능함
① 공동 노출자(함께 입국한 가족 등)의 경우
② 동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경우</td><td>5. ----------(전체 개정)
◆ 해외유입 확진자 및 주요 변이바이러스 환자는 비변이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함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 실무 매뉴얼(지자체 및 격리치료시설용)」 참조</td><td>〈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기준 변경(2021년도 7월1일부터 시행중)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 실무 매뉴얼(지자체 및 격리치료시설용)」 제정 및 배포(7.5.) 내용 적용</td></tr>
<tr><td>64</td><td>- 특히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치료를 원칙으로 함
▶ 환자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강화된 환자관리 방안 지속 하에 자가치료 가능(단, 자가치료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검사기반 격리해제) 아래의 적용대상의 경우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만 적용
▶ 적용대상
①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
②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유행국가▶ 유입 코로나19 확진환자
③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브라질) 감염이 확인된 사람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 해외유입 상황평가를 통하여 월별 유행국가를 선정 후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영국 변이 또는 변이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비변이 감염자와 동일한 격리해제 기준 적용</td><td>[변이바이러스 주요 대응 요약]
<table>
<tr><th></th><th></th><th>세부사항</th><th>주관</th></tr>
<tr><td>1</td><td>역학조사
▸변이 확인 사례의 접촉자 관리 강화</td><td>○ 대상
- 실험실 분석 결과 변이 확인 사례 또는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강화
- 접촉자 관리 강화(일상접촉자 검사 및 모니터링 해제 전 검사)
- 변이 확인사례 감염원, 감염경로 조사</td><td>시·도
(감염병대응부서)
권역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방대본
(역학조사팀)</td></tr>
<tr><td>2</td><td>환자관리
▸비변이 환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td><td>○ (격리) 1인실 격리 권고하나, 다인실 병실 사용 가능(감염관리 유의)
- 보호구 착용, 폐기물 처리 등 감염관리 철저
○ (격리해제) 임상기반 격리해제 기준 적용 가능
- 의료진에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 연장 가능</td><td>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격리치료시설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td></tr>
<tr><td>3</td><td>검사·분석
▸변이바이러스감시
- 일일확진자의 약 20%</td><td>○ 변이바이러스 감시 대상
- 해외유입 사례
- 최근 2~3일내 발생한 신규확진자 중 '조사중' 사례 또는 신규집단사례
○ 변이 확인
- 전장유전체(WGS) 및 타겟유전자 분석
- 주요 변이바이러스 PCR분석*</td><td>방대본
(검사분석팀)
권역대응센터
(진단분석과)
보건환경연구원▶</td></tr>
<tr><td>4</td><td>정보관리
▸정보의 신속한 공유</td><td>○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의 통합 관리
- 변이바이러스 분석 의뢰, 결과 입력, 확인</td><td>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대응센터
방대본</td></tr>
</table>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요 변이바이러스 PCR 분석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시행</td><td>〈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 실무 매뉴얼(지자체 및 격리치료시설용)」 제정 및 배포(7.5.) 내용 적용</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65</td>
<td></td>
<td>
▶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방안
<table>
<tr><th>감시방법</th><th>알파형</th><th>베타형</th><th>감마형</th><th>델타형</th></tr>
<tr><td>격리치료
감염관리</td><td colspan="4">(격리치료) 1인실 격리를 권고하나 다인실 병실 사용 가능(감염관리 유의)
(감염관리) 보호구 착용, 폐기물 처리 등 감염관리 철저
※ (변경 전)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하여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함</td></tr>
<tr><td>격리해제</td><td colspan="4">(격리해제) 비변이와 동일한 격리해제 기준 적용
* 단, 임상상태 및 PCR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임상기반 격리해제 기준일에 도래하였음에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해제일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 알파변이는 비변이와 동일한 격리해제 기적용 중</td></tr>
</table>
▶ 변이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분석 및 문헌고찰 결과, 변이와 비변이 간 전파 가능 기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참고자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 실무 매뉴얼(지자체 및 격리치료시설용)
</td>
<td>〈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관리 실무 매뉴얼(지자체 및 격리치료시설용)」 제정 및 배포(7.5.) 내용 적용</td>
</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Ⅵ.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69	1. 개요 마. 자가치료 1) 의의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경증 환자가 자택에서 치료받는 것 2) 치료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참조	(삭제)	〈환자관리·지침팀 환자관리계〉 자가치료는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방식으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에서 제외
71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나. 격리 해제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를 유지하고, 이후에 격리 해제 ▶ 격리해제 예시 :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시) 격리해제 : 단, 시설에서 격리 중일 경우 해당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2. ---------- 나.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 ▶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 : ----------	〈격리관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및 해제일 명확화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73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이용절차 1)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 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PUI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3. ---------- 가. ---------- 1) --- ○ ---------- ---------- ▶ 현장의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감염위험도 판단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거나 권장한 후 능동감시로 분류·관리할 수 있으며, 다음에 ---------- 검사명령(PUI1로 신고)으로 관리 ① ---------- ② ③ ④	〈역학조사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 명시 및 검사명령 시 신고 사항 안내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Ⅷ. 실험실 검사 관리		
85	4. 검사 기관 가. 의료기관 ○ (응급선별검사)▶ 응급의료기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o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없는 응급실❶ 내원환자로서 ①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등급 및 2 등급)❷ 또는 ②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 등급)❷ (신설)	4. -------- 가. ------ ○ (----------)- ---------- ---------- ---------- o ---------- ① ---------- ② ---------- 응급수술(또는 시술)--------- ---------- ③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85	나. 보건환경연구원 ○ 환자(의사환자)가 아닌 경우로 감염원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 과정 중 제한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야간 응급환자 발생)에 한하여 확진 검사	나. ---------- ○ ---------- ---------- 불가능한 경우(야간 응급환자 발생), 선제검사 등 -------	〈진단총괄팀〉 실제로 수행 중인 업무 명시 등 현행화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 colspan="4">Ⅺ. 질병개요</td></tr>
<tr><td>95</td><td>2. 발생 현황
가. 국외
○ ‘19.12.31~’20.1.3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 보고
○ ‘20.1.7 중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 ‘20.1.11~12 중국 보건부에서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 노출력 보고
○ ‘20.1.13~ 각 국가▶에서 해외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확인
▶ 태국(1.13), 일본(1.15), 한국(1.20)
○ ‘20.1.30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20.3.11 WHO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 '21.5.9.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1,206,243,409건 실시
○ '21.5.10.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157,973,438명 발생, 3,288,455명 사망</td><td>2. ———
가. ——
○ ----------
○ ----------
○ ----------
○ ----------
▶ ----------
○ ----------
○ ----------
○ '21.8.22. ———— 4,619,976,274건 실시
○ '21.8.23. ———— 211,730,035명 발생, 4,430,697명 사망</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현황 현행화</td></tr>
<tr><td>95</td><td>출처: WHO Dashboard('21.5.10.)
<table><tr><th>구분</th><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1,212,026</td><td>63,677,932</td><td>33,006</td><td>1,556,180</td></tr><tr><td>유럽</td><td>860,676</td><td>52,914,444</td><td>18,273</td><td>1,105,636</td></tr><tr><td>동남아시아</td><td>2,877,800</td><td>25,938,567</td><td>29,394</td><td>313,304</td></tr><tr><td>지중해 동부</td><td>273,880</td><td>9,462,769</td><td>5,613</td><td>189,887</td></tr><tr><td>아프리카</td><td>40,983</td><td>3,362,371</td><td>999</td><td>83,970</td></tr><tr><td>서태평양</td><td>126,421</td><td>2,616,609</td><td>1,811</td><td>39,465</td></tr></table></td><td>출처: WHO Dashboard('21.8.23.)
<table><tr><th>구분</th><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1,436,242</td><td>81,824,784</td><td>20,826</td><td>2,074,302</td></tr><tr><td>유럽</td><td>1,147,899</td><td>63,790,934</td><td>11,949</td><td>1,255,791</td></tr><tr><td>동남아시아</td><td>584,795</td><td>40,584,666</td><td>16,810</td><td>629,604</td></tr><tr><td>지중해 동부</td><td>445,882</td><td>14,112,751</td><td>7,224</td><td>257,624</td></tr><tr><td>아프리카</td><td>181,539</td><td>5,497,902</td><td>3,905</td><td>130,785</td></tr><tr><td>서태평양</td><td>522,150</td><td>5,918,234</td><td>6,208</td><td>82,578</td></tr></table></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WHO Dashboard 현행화</td></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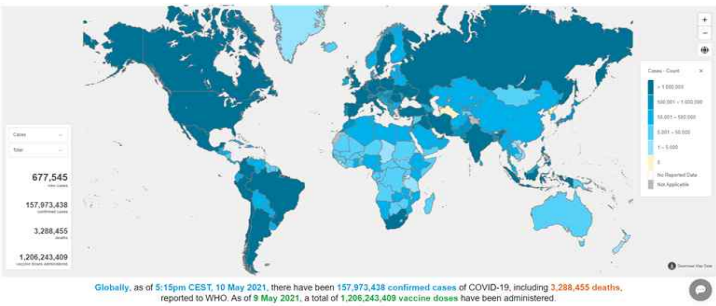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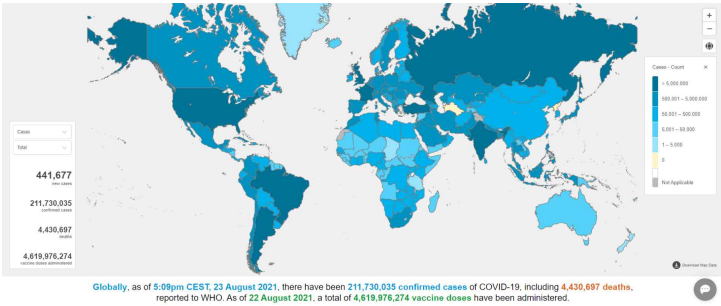	〈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WHO GIS 현행화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
96	나. 국내 ○ '21.5.11. 총 128,283명 발생, 1,879명 사망	나. --- ○ '21.8.24. 총 239,287명 발생, 2,228명 사망	〈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국내 현황 업데이트
97	3. 병원체 및 병원소 가. 병원체 ○ 현재 1,011,071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보유(5.4. 기준, GISAID) ▶ 1개('19.12.24.) → 339개('20.1.31.) → 1,567개('20.4.30.) → 396,837개('21.1.20.) → 1,011,071개('2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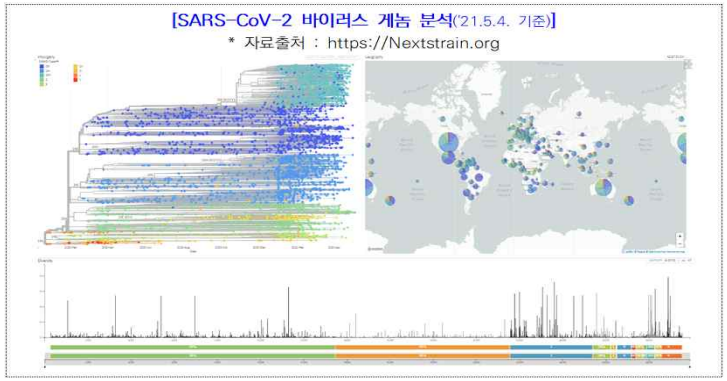	3. ---------- 가. ------ ○ --- 1,467,158개 ----------(6.15. ----------) ▶ ---(--------) → ----(--------) → -----(-------) → --------(--------) → 1,467,158개('2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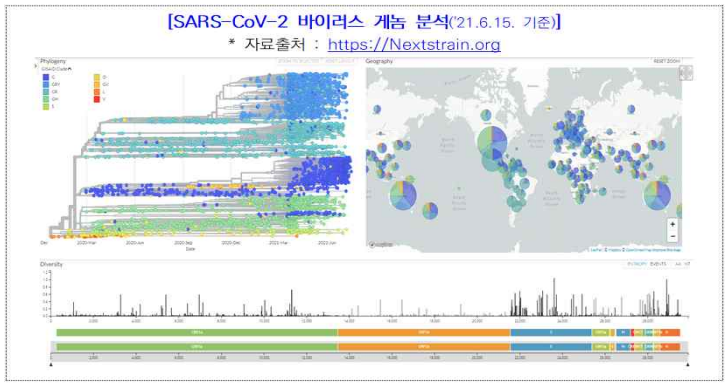	〈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현행화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98	다. 변이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 - 현재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악화시키거나, 사망률을 증가의 근거는 미확인 - 영국의 변이바이러스(B.1.1.7)는 2020년 9월 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도 전파되었고 전파력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이바이러스(B.1.351)는 2020년 10월에 확인됨 - 브라질의 변이 바이러스(P.1)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행자들에서 확인되었으며,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 (신설)	다. --- ○ ---------- 브라질, 인도 등에서 ---------- (삭제)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B.1.1.7) 알파형은 ---------- -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바이러스(B.1.351) 베타형은 ------- -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P.1) 감마형은 ---------- -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B.1.617) 델타형은 2020년 10월에 확인됨	〈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변이바이러스 명칭 WHO 권고에 따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형 현행화
105	6. 진단 가. 유전자 검사 ○ 질병관리청 및 WHO의 지침에서는 E유전자 PCR을 선별검사로 진행하고, orf1b 유전자의 RdRp 부위 PCR을 확인 검사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유전자가 양성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도록 권함	6. --- 가. ------- (삭제)	〈진단총괄팀〉 관련 사항은 유전자검사 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시 적용내용으로 현재 정식 허가제품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여 삭제
105	7. 치료 ○ 현재 코로나19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도할 수 있음 (신설) ○ 항바이러스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7. --- (삭제) (삭제)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폐렴 소견)에 대하여 렉키로나주 투여 가능 ○ 상기 치료 ----------	〈환자관리지침팀 환자관리계〉 치료제 정보 현행화(21.08.05.)
105	8. 예방 백신 ○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의 여러 백신들이 사용 및 개발(임상시험) 중	8. ------- (삭제)	〈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참고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서 식			
113	별도 서식 파일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외국어 번역본(17개 국어) 추가	〈역학조사팀〉 외국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 번역본은 별도 서식에 추가
114	별도 서식 파일	〈서식 4〉 격리통지 수령증 외국어 번역본(17개 국어) 추가	
116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진술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파악하는데 활용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귀하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장소,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와 ----------	〈역학분석총괄팀〉 정보수집 근거, 제3자 정보제공 규정 등에 대한 사항 및 정보주체 투명화
116	역학조사관(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116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단 위치이동)	
116	아울러, 귀하의 진술과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사용 내역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보는 감염병 관련 목적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 카드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수집된 정보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16</td><td>별도 서식 파일</td><td>〈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외국어 번역본(17개 국어) 추가</td><td rowspan="3">〈역학조사팀〉 외국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 번역본은 별도 서식에 추가</td></tr>
<tr><td>117</td><td>별도 서식 파일</td><td>〈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외국어 번역본(17개 국어) 추가</td></tr>
<tr><td>138</td><td>별도 서식 파일</td><td>〈서식 23〉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확진환자) 외국어 번역본(17개 국어) 추가</td></tr>
<tr><td>139</td><td>〈서식 24〉 선제검사 계획서</td><td>〈------〉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계획서</td><td>〈진단검사운영팀〉
서식명 개정, 양식 동일</td></tr>
<tr><td>140</td><td>〈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서식 25 선제검사 결과서
선제검사 결과서
① 검사 대상: 검사 대상 지역(또는 직군) / 총 검사 건수 / 대상자 선정 근거
② 검사 기간: 시작일 - 종료일 2021. . . - 2021. . .
③ 검사 방법 (해당란에 ■ 표시): 검사소 운영 (검사소 / 검사건수) □ 선별진료소 □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 기타(기입); 검사 방법: □ PCR 검사(5건 취합) □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킷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 검사 기관 (검사 기관 / 검사 비율*) □ 보건환경연구원 건(%) □ 민간 수탁기관 건(%) *비율의 합은 100%
④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 관리 방법 □ 검사관리 대장 □ 검사시행 실적보고; 제출 일자 2021. . .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검사관리 대장(서식3)'을 활용하고, 검사 종료 후 진단검사 결과서(서식2)와 '검사시행 실적보고(서식4)'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관할 시도와 질병대응센터에 공문으로 송부
※ 필요시 추가자료 첨부</td><td>〈------〉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서
서식 25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서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서
① 검사 대상: 검사 대상 지역(또는 직군) / 총 검사 건수 / 대상자 선정 근거
② 검사 기간: 시작일 - 종료일 2021. . . - 2021. . .
③ 검사 방법 (해당란에 ■ 표시): 검사소 운영 (검사소 / 검사건수) □ 선별진료소 □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 신설 임시선별검사소 □ 기타(기입); 검사 결과 (합계 / 건수 / 양성자수) 총 검사 건수 기입 / 총 양성자 수 기입; □ PCR 검사(5건 취합) 검사건수기입 최종 양성자 수기입; □ 신속항원검사 검사건수기입 최종 양성자 수기입; 검사 방법: □ PCR 검사(5건 취합) □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킷트 구매비용은 자체 부담, 양성자에 대한 추가 개별 PCR 검사는 국비지원; 검사 기관 (검사 기관 / 검사 비율*) □ 보건환경연구원 건(%) □ 민간 수탁기관 건(%) *비율의 합은 100%
④ 검사 대상자 및 검사 결과 관리: 관리 방법 □ 검사관리 대장 □ 검사시행 실적보고; 제출 일자 2021. . .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검사관리 대장(서식3)'을 활용하고, 검사 종료 후 진단검사 결과서(서식2)와 '검사시행 실적보고(서식4)'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관할 시도와 질병대응센터에 공문으로 송부
※ 필요시 추가자료 첨부</td><td>〈진단검사운영팀〉
코로나 검사 건수 및 양성자수 등 세분화</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41</td>
<td>〈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엑셀양식]

□ 선제검사명 : 시도의 사업명
□ 시도명 : 충청북도

검사 관리대장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
<tr><th>순번</th><th>시도</th><th>시군구</th><th>보건소명</th><th>검사대상</th><th>검체번호</th><th>검체채취일</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성별</th><th>체온</th><th>증상유무</th><th>주요증상</th><th>검사결과</th><th>수탁업체명(보연명)</th><th>비고</th></tr>
<tr><td>1</td><td>충북</td><td>청주시</td><td></td><td>검사대상 특성 기입(지역명, 집단명, 시설명 등)</td><td>집단명-연번</td><td>210121</td><td></td><td>891101</td><td>남</td><td>37.3</td><td>1</td><td>발열 두통</td><td>미열 의심 등</td><td>충북보건환경연구원</td><td>재검사후 양성</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시설명-연번</td><td></td><td></td><td></td><td>여</td><td>38</td><td>0</td><td>-</td><td></td><td>씨젠</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d>시설명-연번</td><td></td><td></td><td></td><td>남</td><td>38.5</td><td>0</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검사비 국비 지원은 지자체가 제출한 <u>검사 관리대장과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이 일치</u>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위 서식을 반드시 준수</td>
<td>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엑셀양식]

□ 선제검사명 : 시도의 사업명
□ 시도명 : 충청북도

검사 관리대장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
<tr><th>순번</th><th>시도</th><th>시군구</th><th>보건소명</th><th>검사대상</th><th>검체번호</th><th>검체채취일</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성별</th><th>체온</th><th>증상유무</th><th>주요증상</th><th>검사결과</th><th>수탁업체명(보연명)</th><th>비고</th></tr>
<tr><td></td><td colspan="3">부처 명</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td><td>충북</td><td>청주시</td><td>00보건소</td><td>검사대상 특성 기입(지역명, 집단명, 시설명 등)</td><td>집단명-연번</td><td>210121</td><td></td><td>891101</td><td>남</td><td>37.3</td><td>1</td><td>발열 두통</td><td>미열의심, 의심 등</td><td>00, 보건환경연구원</td><td>재검사후 양성</td></tr>
<tr><td>2</td><td colspan="3">00부</td><td></td><td>시설명-연번</td><td></td><td></td><td></td><td>여</td><td>36</td><td>0</td><td>-</td><td></td><td>00</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d>시설명-연번</td><td></td><td></td><td></td><td>남</td><td>36.5</td><td>0</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검사비 국비 지원은 지자체가 제출한 <u>검사 관리대장과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이 일치</u>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위 서식을 반드시 준수</td>
<td>〈진단검사운영팀〉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지침 개정 서식 반영(부처명 추가)</td></tr>
<tr><td>142</td>
<td>〈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엑셀양식]

□ 선제검사명 : 시도의 사업명
□ 시도명 : 충청북도

검사 실적보고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
<tr><th>시도</th><th>시군구</th><th>보건소명</th><th>검사대상</th><th>검사자수</th><th>양성자수</th><th>수탁업체명(보연명)</th><th>수탁의뢰일</th><th>비고</th></tr>
<tr><td>충북</td><td>청주시</td><td>oo보건소</td><td>검사대상 특성 기입(지역명, 집단명, 시설명 등)</td><td>98</td><td>1</td><td>충북보건환경연구원</td><td>210101</td><td></td></tr>
<tr><td>충북</td><td>청주시</td><td>oo보건소</td><td></td><td>182</td><td>1</td><td>씨젠</td><td>210101</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전체 검사 실적은 검사 관리대장(서식 26)과 검사자 수가 일치 해야함
** 검사자수는 검사 대상 인원수만을 기입함(재검사 수는 기입하지 아니함)</td>
<td>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엑셀양식]

□ 선제검사명 : 시도의 사업명
□ 시도명 : 충청북도

검사 실적보고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
<tr><th>시도</th><th>시군구</th><th>보건소명</th><th>검사대상</th><th>검사자수</th><th>양성자수</th><th>수탁업체명(보연명)</th><th>수탁의뢰일</th><th>비고</th></tr>
<tr><td colspan="3">부처명</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충북</td><td>청주시</td><td>oo보건소</td><td>검사대상 특성 기입(지역명, 집단명, 시설명 등)</td><td>98</td><td>1</td><td>충북보건환경연구원</td><td>210101</td><td></td></tr>
<tr><td colspan="3">00부</td><td></td><td>182</td><td>1</td><td>씨젠</td><td>210101</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전체 검사 실적은 검사 관리대장(서식 26)과 검사자 수가 일치 해야함
** 검사자수는 검사 대상 인원수만을 기입함(재검사 수는 기입하지 아니함)</td>
<td>〈진단검사운영팀〉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지침 개정 서식 반영(부처명 추가)</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43
~
144</td><td>(신설)</td><td>〈서식 28〉 진단검사비 청구서

서식 28 진단검사비 청구서

진단검사비 청구서

[한글양식]
□ 수탁검사기관명 :
□ 청구금액 : 금 _____원(_____원)
□ 청구내역

수탁기관 담당자 : 연락처 :
<table>
<tr><td rowspan="2">수탁 검사 기관</td><td>시도</td><td>시 군 구</td><td>보건소 명</td><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취합검사</td><td colspan="2">개별검사</td><td>대상 인원(명)</td><td>양성자 수(명)</td></tr>
<tr><td colspan="3">부처명</td><td>건수</td><td>금액(원)</td><td>건수</td><td>금액(원)</td><td>건수</td><td>금액(원)</td><td></td><td></td></tr>
<tr><td rowspan="3"></td><td>홍보</td><td>청주시</td><td>○○보건소</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제출서류 목록 : 검사의뢰기관 확인서(본서식 첨부양식), 지자체(부처) 검사 의뢰 관리대장(엑셀), 수탁검사기관 결과 관리 대장(엑셀)

□ 민간 수탁검사기관
_____는(은) 위 진단검사 의뢰 내역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검사 의뢰 기관의 확인을 받고 진단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청구일 20_____. ____. ____.

청구인(직위/성명) _____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 양식] 보건소(부처)별 세부 청구내역을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고 확인 날인합니다.

□ 선제검사명 : 시도(부처)의 사업명
□ 선제검사 기간 : 20 . . . ~ 20 . . .
□ 시도, 보건소명(부처명) :
□ 청구금액 : 금 _____원(_____원)
□ 청구내역

지자체(부처) 담당자 : 연락처 :
<table>
<tr><td rowspan="2">수탁 검사 기관</td><td>시도</td><td>시군구</td><td>보건소명</td><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취합검사</td><td colspan="2">개별검사</td><td>대상 인원(명)</td><td>양성자 수(명)</td></tr>
<tr><td colspan="3">부처명</td><td>건수</td><td>금액(원)</td><td>건수</td><td>금액(원)</td><td>건수</td><td>금액(원)</td><td></td><td></td></tr>
<tr><td rowspan="2"></td><td>홍보</td><td>청주시</td><td>○○보건소</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부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검사 의뢰기관
_____도 _____시 ____보건소(_____부)는 위 진단검사 의뢰 내역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자(직위, 성명) _____(서명)

확인일자 20_____. ____. ____.

질병관리청장 귀하</td><td>〈진단검사운영팀〉
진단검사비 청구방식 개선 관련 서식 신설</td></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 록			
153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신설)	[----------] ○ 백신접종 예약을 하신 분은 격리해제 이후로 예방접종일을 연기합니다.	〈격리관리팀〉 자가격리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위한 무단 외출 사례 방지 관련 사항 안내
162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 병상배정 원칙 ○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병상 배정하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배정 가능	□ ---------- ○ ---------- 배정하며, 생활치료센터 신규설치 시, 병원 입원 중인 경증환자는 전원 조치를 원칙으로 함	〈환자병상지원팀〉 각 지자체내 생활치료센터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최소화 및 재원 적정성 확보
185 ~ 191	〈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검사전문기관 21개소] [의료기관 153개소]	[검사전문기관 23개소] [의료기관 : 173개소]	〈진단총괄팀〉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현행화 (21.8.11. 기준)
208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신설)	▶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	〈환자관리지침팀〉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련 지침 안내
220	〈부록 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공개 원칙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④ 공개 범위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 ③ ------- : ----------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④ ------- - (---------) ----------	〈역학조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간 명확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21.6.8) 재발방지 대책으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보완 : 개인 또는 상호(시설)이 특정되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방식, 절차 구체화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 - (---) ---------- - (상호)▶ ---------- - (------) ---------- ▶ 주의사항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시·도 및 시·군·구 등 관련 상호기관간 재확인	
221	□ 기타 ○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 정보 게시방법 등에 유의 ▶ 정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시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전달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텍스트(text) 형태로 정보 게시 등	□ --- ○ ---------- ○ 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활용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 시 지침 준수 및 지자체 홈페이지 접근 경로 간소화 ▶ 동선 공개 누리집 접근경로 간소화 예시▶ ▶ 경로 예시) 지자체 누리집 → 지자체 코로나19 누리집 → 발생 동향 → 확진자 이동 경로 ▶ ---------- TXT, HWPX 등의 파일 형태로도 --------	〈역학조사팀〉 중대본 회의 건의사항 이행('21.6.20) 확진자 공개동선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table>
<tr><th>쪽</th><th>현행(10판)</th><th>10-1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28</td><td>〈부록 20〉 신속항원검사 대응 및 조치방안
(붙임1)(첨부2) 신속항원검사 허가 시약 사용목적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항원 진단시약 (2021.1.4. 기준)
사용 시 주의사항
◦ 증상 발현일로부터 6일[1] 또는 8일[2] 이후에 채취된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설)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Q COVID-19 Ag Test
2) ㈜젠바디, GenBody COVID-19 Ag Test</td><td>□ ---------- (2021.7.1. 기준)

◦ ---------- 수 일▶ ----------

▶ 신속항원검사제품 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5일~8일 이후 민감도 감소 가능(제품별 주의사항 확인 필요)
(삭제)</td><td>〈진단총괄팀〉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는 시점이 제품별로 상이하여 내용 수정
※ 현재 8개 제품(7.1.기준)</td></tr>
<tr><td>241</td><td>(신설)</td><td>〈부록 24〉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부록 24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추가
<table>
<tr><th>연번</th><th>지원방법</th><th>언어</th><th>이용시간</th><th>직통번호</th></tr>
<tr><td>1</td><td>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역센터
1) 경기수원 : 031-257-1841
2) 대전 : 042-488-2979
3) 광주 : 062-366-1366
4) 부산 : 051-508-1366
5) 경북구미 : 054-457-1366
6) 전북전주 : 063-237-1366</td><td>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타갈로그),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크메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td><td>365일 24시간
*지역센터
09:00-18:00
(18시 이후
중앙센터로 자동연결)</td><td>1577-1366
전화 연결 후
구두로 언어
선택</td></tr>
<tr><td>2</td><td>고용노동부/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1644-0644)
* 지역센터
1) 한국센터 : 02-6900-8000
2) 의정부센터 : 031-8389-111
3) 김해센터 : 055-338-2727
4) 창원센터 : 055-253-5270
5) 인천센터 : 032-431-5757
6) 대구센터 : 053-654-9700
7) 천안센터 : 041-411-7000
8) 광주센터 : 062-944-1199
9) 양산센터 : 055-912-0255</td><td>중국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td><td>토요일 휴무/
09:00~18:00
(점심12:00~13:00)</td><td>1644-0644
전화 연결 후
국가번호 선택</td></tr>
<tr><td>3</td><td>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td><td>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싱할라),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크메르), 방글라데시어(벵골), 파키스탄어(우르드), 네팔어, 미얀마어, 키르기스스탄어(키르기즈스타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td><td>365일 09:00~18:00</td><td>1577-0071+
국가번호+*
※ 포스터 첨부</td></tr>
<tr><td>4</td><td>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종합센터 1345)</td><td>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td><td>365일 24시간
09:00~18:00</td><td>1345+국가번호
+*
※ 포스터 첨부</td></tr>
<tr><td>5</td><td>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1330)</td><td>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td><td>365일 24시간
08:00~19:00</td><td>1330+국가번호
※ 포스터 첨부</td></tr>
</table></td><td>〈역학조사팀〉
외국인 통역지원 콜센터 언어별 직통번호 안내 추가</td></tr>
</table>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242	(신설)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부록 25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환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확진자 대상 ○ 1차적으로 본인이 '기초, 심층역학조사서' 필수항목 중심으로 작성할 것 - 필수기재항목(총 21개 항목: 음영) 은 반드시 기재 ○ 통역지원자 도움받아서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검토·추가 □ 기초/심층 역학조사서 필수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 1. 인적사항 - 1.2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 앞칸에는'생년월일'기입, 뒷칸에는'5000000'기록 * (보건소 담당자 업무) 뒷자리의 첫 자리는 임의로 '5(1900년대생 외국국적 남성), 6(1900년대생 외국국적 여성), 7(2000년대생 남성), 8(2000년대생 여성)'로 입력 - 1.5 거주지 주소 : 현재 거주지 주소 - 1.7 직업 : 직장명 또는 학교명, 주소, 연락처 기록 2. 증상 및 기저질환 - 2.1 증상 유무, 2.2 증상발현일, 2.3 최초증상 종료 반드시 체크 3. 추정 감염경로 - 3.2 확진자 접촉 :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만났던 선행확진자의 이름, 관계 기록 - 3.4 기타 : 추정감염경로 관련 기타사항 작성 4. 집단시설 이용력 -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숙식 생활한 집단시설명 기록 5.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 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가정, 집단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접촉자 파악을 위함 - 각 시설별로 장소와 접촉자 규모 작성	〈역학조사팀〉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안내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Q&A	
251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 Q1. ---------- ○ ----------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분만환자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252 ~ 253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Q6. ---------- ○ ----------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❶,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및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❷의 경우 ---------- ▶ ----------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하거나 응급분만환자의 경우 ○ 응급상황의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및 신속항원검사 비용 내용 추가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253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 절차 ② (선제적 검사 지원) 일정규모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전 지자체 자체 판단에 따라 시행(사전에 질병관리청 승인 필요)하는 진단검사비 지원 → 취합(풀링)검사 진행 * 지급 절차 : 시도에서 공문(엑셀 자료)으로 국비 지원 요청 시 별도 매칭 절차 없이 지급 ③ (사례정의 미해당건 검사 지원) 보건소 선별진료소(무증상자 등) 및 임시선별검사소 대상 진단검사비 지원 → 취합(풀링)검사 진행 * 지급 절차 : 1)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임시선별진료소) 입력 현황(보건소 입력)과 2)수탁업체 공문(엑셀 자료) 매칭 후 지급	(삭제)	〈진단검사운영팀〉 진단검사비 지급 절차 삭제
258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5. ---------- Q9. ---------- ○ ---------- 아래 홈페이지에서 ---------- ▶ 지자체 누리집 → 지자체 코로나19 누리집 → 발생 동향 → 확진자 이동 경로	〈환자관리지침팀〉 역학조사팀 이동경로 동선 공개 관련 의견에 따라서 Q&A 답변 해당 항목 현행화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262	6. 격리 및 격리해제 Q8.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6. ---------- Q8. ---------- 단순 PCR ---------- ○ ---------- ----------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 ○ ---------- ---------- 격리해제되어 단순 PCR 재검출된 경우는 ----------	〈역학조사팀〉 격리 및 격리해제 사항 중 PCR 재검출 관련 Q&A 사항 개정
279	(신설)	14. 재검출 사례 Q1.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재검출이 나왔어요. 재감염 추정사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 세계 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출 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노출력에 의한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따라서 미국 CDC 재감염 의심사례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첫 확진 90일 이후 PCR 양성판정된 사례는 재감염 추정 사례로 보고 신규 확진자에 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처) CDC, Common Investigation Protocol For Investigating Suspected SARS-CoV-2 Reinfection	〈역학조사팀〉 PCR 재검출 사례 관련 Q&A 사항 전체 신설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279	(신설)	Q2. 격리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출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격리해제 부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해 격리해제 부적정이 확인될 시 격리해제를 취소하고 환자 재입원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해외 확진력이 있는 입국자는 당시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나요? ○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제출받은 해외 확진 당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재검출 사례 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으로 사례판정 후 환자 및 접촉자 관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검역소에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와는 별도로, 해외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분들은 서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확진 당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의 증명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280	(신설)	Q4. 해외 확진력이 있는데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외에서 확진 및 완치 후, 국내 입국 후 확진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쪽	현행(10판)	10-1판 개정(안)	개정사유
280	(신설)	Q5.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코로나19 검사결과지'도 인정되나요? ○ '코로나19 검사결과지'의 검사방목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되나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 재검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어 개인적으로 단순 재검출이 의심됩니다. ○ 첫 확진 90일 이후 재검출 시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재감염 추정사례로 간주하여 신규 확진자에 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Q7. 첫 확진 후 45-89일 사이 재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이러한 경우 별도의 관리조치는 필요 없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재검출 사례조사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81	14. 기타	15. ---	〈환자관리지침팀〉 Q&A 우선 순위에 따라서 14. 재검출 사례 다음으로 지정